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7호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상주시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고 정비하여 전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안 제4조)

라. 청소년육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청소년육성사업 등(안 제5조~6조)

- 마. 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지원 및 사업의 위탁, 지도·감독(안 제7조~9조)
- 바.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의 달 등(안 제10조~11조)
- 사.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안 제12조~13조)
- 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안 제14조)
- 자.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15조~16조)
- 차. 위원회의 임기 및 제척 등, 결격사유(안 제17조~19조)
- 카. 위원회의 위원회 운영 및 간사 및 서기, 의견청취(안 제20조~22조)
- 타.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및 자매도시 협정(안 제23조~24조)
- 파. 자치·참여 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단체 구성(안 제25조~26조)
- 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임무, 임기 및 해촉, 경비 등 지원, 협의회 운영(안 제27조~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20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개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ok810615@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37-7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angjucouncil.go.kr> → 의회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_____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